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보호를 이용하고자하는 모든 수급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 ③ 계약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시 이용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 ④ 이용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제공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계약기간중 등급변경이나 기간만료로 인한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연장시에는 계약기간란의 기간만 수정 후 상호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다.
- ⑤ 이용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중 재가급여로 인정받은 수급자 또는 등급 외 이용자에게 본 센터는 이용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단, 등급 외자인 경우에는 월중 이용시 당일로부터 당월말일까지의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수납할 수 있다.

- ⑥ 이용 중 이용료의 반환 - 수급자가 이용 종결하는 때에는 수납한 선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체없이 수급자 또는 수급자를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등급변경 등으로 인한 이용료의 변경은 기관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되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되 수가변경이나 등급변경 또는 수급자의 자격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된 비용은 변경계약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익월부터 수납하도록 하되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선유선 전화고지후 서면고지) 통보하도록 한다.
-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기관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액)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수급자의 개인건강악화 등의 사항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예, 수급자의 개인건강악화등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기관진료 및 투약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등)
-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수급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황, 신체 제재에 관한 동의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보호대사용, 질환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체 일부의 구속,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간호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치매등으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 및 공격양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급박한 상황의 경우 일시적 특별보호 조치를 하되 사유를 확인하여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

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계약서 - 급여제공계약(표준약관)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분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부분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발급확인서 또는 부분 간인으로 발부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⑫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이용종결(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기관의 협약·연계 병원의 특별한 경우 수급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이용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의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등의 손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⑭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월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 내 개인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기관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2021년 주간보호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1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비용 주간보호 수가가 1.29%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상안내문을 공지합니다.

1)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변화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년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2021년 (증가액)	1,520,700원 (22,400원)	1,351,700원 (19,900원)	1,295,400원 (19,100원)	1,189,800원 (16,600원)	1,021,300원 (14,100원)	573,900원 (7,300원)

2)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등급별 1일 수가인상금액안내

(단위:원)

등 급		2020년도 수가	2021년도 수가	2021년 인상액
3시간이상 6시간미만	1등급	35,030	35,480	450
	2등급	32,430	32,850	420
	3등급	29,940	30,330	390
	4등급	28,570	28,940	370
	5등급	27,210	27,560	350
	인지지원등급	27,210	27,560	350
6시간이상 8시간미만	1등급	46,960	47,570	610
	2등급	43,500	44,060	560
	3등급	40,150	40,670	520
	4등급	38,790	39,290	500
	5등급	37,410	37,890	480
	인지지원등급	37,410	37,890	480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등급	58,410	59,160	750
	2등급	54,110	54,810	700
	3등급	49,960	50,600	640
	4등급	48,590	49,220	630
	5등급	47,210	47,820	610
	인지지원등급	47,210	47,820	610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변동없음)

* 문의전화 : 054) 436-5744

* 주 소 : 경북 김천시 가메실길 8